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오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678

발의연월일: 2022. 5. 20.

발 의 자:조오섭·김승남·문진석

송갑석 • 우원식 • 윤영덕

이동주 · 임종성 · 주철현

허 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이러한 주택을 특별분양받아 세제 혜택을 받은 후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 계약을 하였다가 일정 기간 이후 주택을 매도하여 차익을 남기는 등 취지에 맞지 않게 주택을 활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해당 직원들의 실제 거주 여부를 파악하는 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.

이에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이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명시하려는 것임(안 제81조제3항 및 제6항).

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거주"를 "거주(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"로,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3년 12월 31일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제3항에 따른 해당 지역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81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1조(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	제81조(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
전에 대한 감면) ①・② (생	전에 대한 감면) ①·② (현행
략)	과 같음)
③ 제1호 각 목의 자가 해당	③
지역에 <u>거주</u> 할 목적으로 주택	거주(「주민등록법」에
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	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
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	거주하는 것을 말한다. 이하 이
우에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	조에서 같다)
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<u>2022년</u>	<u>2023년</u>
<u>12월 31일</u> 까지 감면한다.	12월 31일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④·⑤ (생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⑥ 제3항에 따른 해당 지역 거
	주 여부를 확인하는 세부적인
	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
	여 고시한다.